

# 예 산 총 칙

201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14,534,619	15,436,039
일반회계	472,921,166	14,187,635
특별회계	41,613,453	1,248,404
공기업특별회계	33,957,562	1,018,727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8,859,333	565,78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5,098,229	452,947
기타특별회계	7,655,891	229,677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876,237	56,287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1,485,335	44,560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1,955,247	58,657
신정지구개발사업 특별회계	2,030,585	60,918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08,487	9,25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6년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5년 명시이월 사업은 불임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508,27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3,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